

예 산 총 칙

2018년도 추경 1 회

제 1 조 2018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	177,491,766	5,324,753
일반회계		154,616,105	4,638,483
특별회계		22,875,661	686,270
	기타특별회계	22,875,661	686,270
	의료급여기금	408,351	12,251
	주거환경개선사업	512,976	15,389
	주차장	21,653,211	649,596
	지하수관리	266,219	7,987
	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	34,904	1,047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,453,458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,4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,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,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.